

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제1조중 "영세서민"을 "영세민"으로 한다.

안제2조중 "영세서민"을 "영세민"으로 한다.

안제9조4항중 "할수있다"을 "해야한다"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 (목적)</p> <p>이조례는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용자금(이하기금이라한다)의 설치와 관리운영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설</p> <p>제6조 (용자금상환등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구청장은 이 자금을 용자를 받은자가 다음에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용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조 (목적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생활안정을 위</p> <p>한 단기용자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영에</p> <p>제2조 (기금의 설치)</p> <p>영세서민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략</p> <p>제9조 (용자금상환등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생략</p> <p>③ 생략</p> <p>④ (현행 6조2항과 같음)</p>	<p>제1조 (목적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영</p> <p>세민의</p> <p>제2조 (기금의 설치)</p> <p>영세민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략</p> <p>제9조 (용자금상환등)</p> <p>① -----</p> <p>② -----</p> <p>③ -----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상환하게 해야 한다.</p>